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7523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1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단52771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2019.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8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C이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채권이 피고의 채권 성립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고, 이미 제1심판결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9. 2. 중순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가등기를 하고 소액의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인 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소외 회사의 채무를 C이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는 C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 점, C이 그중 2,500만 원을 소외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채무변제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다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을다 3,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2019. 3. 6. 3,0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날 C이 2,500만 원을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실제 C에게 교부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500만 원의 경우 그 사용처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② C이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 중

같은 날 다시 송금된 2,300만 원의 수령인인 N, O이 누구인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C으로부터 받았다는 각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30. 작성된 것이고, C으로부터 받았다는 이자 내역도 2020. 3. 30. 주식회사 Z로부터 송금받은 것인 점, ④ 피고가 C에게 2019. 3. 6. 돈을 빌려주면서 받았다는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은 2019. 6. 4.인데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C에게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라며 제출한 문자내역은 C이 물건 입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등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피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인지 의문일뿐더러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C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가 된다. 게다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처럼 C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워져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는, 매매예약의 가등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라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피고가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3,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초 피고는 4명이므로 소송비용을 4명이 안분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단순히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여 부담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래 피고였던 소외 회사와 C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1심판결은 남은 피고들인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에 대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의 구체적인 소송비용 부담 문제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될 문제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